

국책과제,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-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

감경 재결 사례: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5. 10.자 2021-11751 재결



## 1.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

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,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,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.

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,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.

## 2.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

행정심판법 제5조(행정심판의 종류)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소심판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
2. 무효등확인심판: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
3. 의무이행심판: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

행정심판법 제43조(재결의 구분)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.

행정심판법 제49조(재결의 기속력 등)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.

### 3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

#### 재결 사례 - 중앙행심 2021-11751 재결

(1)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

(2)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

(3) 재결 이유 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4의2에서 그 밖에

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

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, 청구인이 이 사건

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

은 확인되지 않는 점,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

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피

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

사건 처분은 부당하다.

첨부: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5. 10.자 2021-11751 재결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소청심사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